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4서식] <개정 2019. 6. 19.>

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일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신고번호
재발급 사유	[ ] 잃어버린 경우	[ ] 못 쓰게 된 경우
분실 사유 (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		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개인과외교습자) 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

신청인 (개인과외교습자) 제출서류	1.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.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(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개인과외교습자 신고(변경신고)대장	

처리절차		
재발급신청서 작성 →	접수 및 검토 →	재교부
신청인	처 리 기 관 (교육지원청)	처 리 기 관 (교육지원청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